

의안번호	2126319
의 퇴 인	신현영의원
회 답 일	2024. 02. 21.
추 계 번호	24C0063

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(일부추계) 개정안에 따라 양육비이행관리원 설립위원회를 설치·운영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 800만원, 2026년 800만원 등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총 1,700만원(연평균 300만원) 이상으로 추계됨
- 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임
 - 이에 개정안의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것임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5~2029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5	2026	2027	2028	2029	합 계	연평균
이행관리원의 설립준비 (안 부칙 제2조)	8	8	-	-	-	17	3

주: 단수 조정에 따라 합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7조(양육비이행관리원)	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와 이행확보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양육비이행관리원을 설립함(제1항)	의무규정
		양육비이행관리원은 필요한 경우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 및 특별자치도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음(제3항)	재량규정
		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행관리원의 설립·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음(제8항)	재량규정
2	안 부칙 제2조(이행관리원의 설립준비)	여성가족부장관은 이행관리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 공포일부터 30일 이내에 7명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양육비이행관리원 설립위원회를 설치함	의무규정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제7조(양육비이행관리원)	×	개정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고, 현재 개정안에 따른 지원 계획 등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지원 대상 및 범위 등을 추정하기 곤란
2	안 부칙 제2조(이행관리원의 설립준비)	○	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추계

□ (안 부칙 제2조) 양육비이행관리원 설립위원회를 설치·운영할 경우 위원회 위원에 대한 회의 참석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

- 개정안은 7명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양육비이행관리원 설립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, 본 추계에서는 “국립농업박물관 설립위원회” 사례를 준용하여 7명의 설립위원이 2년간 연간 6회씩 회의를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

□ (안 제7조) 현재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산하에 설치된 양육비이행관리원을 독립기관화하고 분사무소를 설치·운영하는 경우 신규 인력채용 등으로 추가재정소요 발생이 예상되나, 현 시점에서 양육비이행관리원의 확대 규모 및 분사무소 설치 여부 등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으므로 합리적인 추계 불가능

- 현재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이행개선부 15명, 가족상담단 15명, 법률지원단 30명, 양육지원부 13명 등 총 73명으로 구성되어 양육비 이행 확보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
- 개정안에 따라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 양육비이행관리원을 독립시키고 분사무소를 설치할 경우 신규 인력이 충원될 수 있으므로, 이에 따른 인건비, 경상운영비, 자산취득비 등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음

- 그러나 현 시점에서 양육비이행관리원의 확대 규모 및 분사무소 설치 여부 등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으므로 합리적인 추계가 불가능함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개정안 부칙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으로 함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가. 이행관리원의 설립준비(안 부칙 제2조)

- 개정안은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설립위원회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어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됨
- 본 추계에서는 유사사례인 “국립농업박물관 설립위원회”의 경우를 준용하여 양육비이행관리원 설립위원회 설치·운영 비용을 추계
 - 설립위원회의 민간위원은 7명, 회의 참석수당 단가는 20만원, 회의는 2년간 연간 6회씩 개최하는 것으로 가정
- 양육비이행관리원 설립위원회 위원의 회의 참석수당 지급으로 2년간 (2025~2026년) 총 1,68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

[표 2] 양육비이행관리원 설립위원회 설치·운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5~2029년
(단위: 백만원, 명, 회)

	2025	2026	2027	2028	2029	합 계	연평균
단가(A)	0.2	0.2	—	—	—		
인원 수(B)	7	7	—	—	—		
개최 횟수(C)	6	6	—	—	—		
합 계(A×B×C)	8.4	8.4	—	—	—	17	3

주: 단수 조정에 따라 합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V. 부대의견

- 본 비용추계서의 추가재정소요액은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결과로 설립준비위원회의 실제 민간위원 수, 회의개최 횟수 등에 따라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액은 달라질 수 있음
- 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으로, 개정안의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

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사회비용추계과	우병혁	이진우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우병혁	02-6788-3739	wbhcd@assembly.go.kr